



질병관리청

질 병 관 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12월 보수교육 추가)

1. 관련

- 가.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제3항
-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8호)

-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2조제3항(보수교육 주기 3년 적용)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23.12.31.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5만원, 3차이상위반 100만원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별표2])

- '23년 보수교육 대상자: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 '25년 보수교육 대상자: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22년도 선임교육을 이수한 자

- 3. 아울러, 올해 내 예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협회 회원 등 의료기관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 보수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12월 일정

구분	의과 교육기관	치과 교육기관
교육기관명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대한영상치의학회
누리집주소	www.rs20.or.kr	www.dentalsafeimaging.or.kr
교육일시	12월 31일(일) 09:20 ~ 12:00 (추가)	12월 30일(토) 18:50 ~ 21:10 (추가)

- 붙임 1. 의과) 23년도 책임자교육 안내문 1부.
 2. 치과) 23년도 책임자교육 안내문 1부. 끝.

질병관리청장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대한방사선사협회

보건연구사

장재욱

의료방사선과 전결 2023. 12. 28.

장

만유정

협조자

시행 의료방사선과-4305

(2023. 12. 28.)

접수

우 281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10 의료방사선과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7512

팩스번호 043-719-7519

/ jangjaeuk@korea.kr

/ 대국민 공개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